

의안 번호	1253	【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7. 5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7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7. 13.(수)

2. 제안이유

- 척과천 물놀이장의 명칭을 개정하고, 동천 및 척과천 야외물놀이장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물놀이장 명칭 변경 :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⇒ 다전 야외물놀이장
- 「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추가 :
1일 1인당 2,000원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척과천 물놀이장 명칭 개정과 동천·척과천 야외 물놀이장내 새롭게 설치한 워터슬라이드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〈 관 계 법 령 〉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